###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13

발의연월일: 2024. 6. 25.

발 의 자:이재강·조인철·김문수

민병덕 · 양부남 · 박희승

민형배ㆍ김 현ㆍ김승원

박지원 • 정성호 • 김준혁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에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하여 정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최근 지방분권기조가 강화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권한이 커지고 있는 만큼 남북관계 발전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특히 정치적, 군사적으로 민감할 수 있는 중앙정부에 비해 보다 유연할 수 있는 지방정부의 장점을 활용하여 남북교류협력을 활발히 한다면 남북관계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임.

이에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책무의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도 명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능동적으로 남북교류협력에 기여하여 남북관계 발전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등).

#### 법률 제 호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의 제목 중 "정부의"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정부는"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정부는"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부는"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정부는"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정부는"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단체 등의 사회문화분야의 교류협력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제1항 중 "정부는"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으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부는"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장 남북관계 발전과 <u>정부의</u>	제2장 남북관계 발전과 <u>정부 및</u>
책무	<u>지방자치단체의</u> 책무
제6조(한반도 평화증진) ① <u>정부</u>	제6조(한반도 평화증진) ① <u>정부</u>
<u>는</u> 남북화해와 한반도의 평화	및 지방자치단체는
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한	
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남북경제공동체 구현) ①	제7조(남북경제공동체 구현) ①
<u>정부는</u>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을 통하여 남북경제공동체를	
건설하도록 노력한다.	
② 정부는 남북경제협력을 활	②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화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기	
반을 구축하는 등 남한과 북한	
공동의 경제적 이익을 증진시	
키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한	
다.	
	<b>.</b>
제8조(민족동질성 회복) ① <u>정부</u>	제8조(민족동질성 회복) ① <u>정부</u>
는 사회문화분야의 교류협력을	및 지방자치단체는
활성화함으로써 민족동질성을	
회복하도록 노력한다.	

## ② (생 략) <u><신 설></u>

제10조(북한에 대한 지원) ① <u>정</u> 지부는 인도주의와 동포애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북한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생략)

제12조의2(남북관계 발전의 기반 저조성) ① 정부는 남북관계 발 전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 5. (생략)

② (생 략)

	/ - 1 - 11 - 1	-1 4 \
(2)	(혂행과	71-0-1
(4)	( 11 % 11	アロノ

3	지방자	치단체는_	민간단	<u> </u>
<u>등</u> 으	기 사회된	문화분야의	교류협	립력
을	위하여	행정적• 🤇	재정적	지
원을	을 할 수	있다.		

저	103	조(5	부한에	대한	지원)	1	<u>정</u>
	<u>부</u>	및	지방기	<u> </u>	체는		
							- – –

② (현행과 같음)

세12조의	]2(남	남북관)	계	발전의	기반
조성)	1	정부	밎	지방지	가치단
체는-					
1. ~	5. (	현행괴	나 같	음)	

② (현행과 같음)